청·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

발의연월일: 2020. 6. 4

발 의 자:노웅래·한준호·박 정

장철민 · 김주영 · 천준호

전재수 · 박영순 · 홍영표

권인숙 • 윤준병 • 김민기

윤관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통계청의 '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'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는 전년 대비 5만 6,000개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증가 수 8만 3,000개의 약 67.4%를 차지하고 증가율도 6.4%로 50대 1. 3%, 40대 0.3%, 30대 0.8%에 비해 월등히 높음.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 한편,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. 이와 같이 청년 및 60세 이상연령대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상황이지만, 현행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은 모든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및 60세 이상연령대의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청·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

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·장년의 창업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청·장년 창업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청·장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바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·장년 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사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

- 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아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자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·장년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차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에 대하여 자금조달, 인력, 기술, 판로,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제13조).
- 카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타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·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청·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청·장년"이란 창업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장년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청·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
 - 2.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 - 3. 청·장년 창업자에 대한 자금·정보·기술·교육·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·장년의 창업을 지

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·장년의 창업에 관 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·평가하고, 그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·장년의 창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6조(청·장년 창업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 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

관 또는 단체를 청·장년 창업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청·장년에 대한 사업공간 제공
- 2. 청·장년의 창업에 필요한 법률·세무·회계 등의 상담
- 3. 청·장년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·컨설팅 지원
- 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3.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자금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
- ② 정부는 청·장년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경영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
 - 2. 청·장년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
 - 3. 그 밖에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,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기술개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·장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청·장년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
 - 2. 청·장년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

- 3.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
- 4.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
- 5. 지식재산권 창출·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청·장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교육훈련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, 방법, 절차, 비용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판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 보·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

- 2.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
- 3.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
- 4.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
- 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판로 개 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·장년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 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 상으로 선정된 청·장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선정된 청·장년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
- 2. 선정된 청·장년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
- 3. 선정된 청·장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청·장년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부도·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청·장년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,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정보의 제공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조달, 인력, 기술, 판로,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14조(투자유치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청·장년에 대한 투자자금 유치
 - 2. 청·장년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
 - 3. 청·장년에 대한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지원
- 제15조(홍보사업 등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·장년의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·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청·장년의 창업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

- 2. 청·장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
-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
- 제16조(보고·검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17조(청문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
 - 2. 제12조제2항에 따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
- 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·장년의 창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